2026년 제7호 수록

품목분류

CASE 6 비강용 분무기 조립체

판정번호
N363546

물품 정보

용도

- 약물을 미세한 방울로 분해하여 환자의 비강 내에 분사

구성

- 분무기 팁: 약물을 분해하여 분무
- 분무기 본체: 관 형태 부품으로, 약물을 주사기에서 팁으로 전달

쟁점 HS

제9018호 의료용 기기

제9019호 치료용 호흡기기

CBP 판단

- 분무기 팁과 본체로 구성된 비강용 분무기 조립체로, 부품이 분리된 상태로 수입된 후 조립
-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**주사기와 연결**하여 약물 투여에 사용되므로 **주사기의 부분품에 해당**한다고 주장
- 그러나 주사기는 약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, **쟁점물품은 액상 약물을 미세한 방울로 분해하여 비강 내에 분무하는 기능을 수행**하므로 두 기기는 기능과 작동 원리에서 차이가 있음
- 쟁점물품의 이러한 작동 방식은 **제9019호에서 규정하는 에어로졸 치료기의 기능적 특성에 부합**

주사기의 부분품이 아닌 약물 분무 기능을 수행하는 에어로졸 치료기로 보아 제9019호에 분류

미국 HS-CODE 결정

9019.20

치료용 호흡기기